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

1. 1등급 수입식품등

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된 수입식품등(축산물의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포함한다)

- 1)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 2)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
- 3)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나.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별표 9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서류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별표 9에 따른 현장검사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2. 2등급 수입식품등

가.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나. 법 제21조에 따른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서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3. 3등급 수입식품등

가.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농산물·임산물의 경우 수출업소, 축산물의 경우 해외작업장을 말한다)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것으로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4.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가. 식품(농산물·임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

산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하 나목부터 사목까지 같다)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나. 식품첨가물: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다. 농산물·임산물: 생산국·품명·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라. 수산물: 생산국·품명·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마.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조국·해외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바. 건강기능식품: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료 및 주원료의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사. 축산물: 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을,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제1호가목1)·3)에 해당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